

#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 송재혁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 
번호 307

발의년월일 : 2018년 12월 31일

발 의 자 : 송재혁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동길, 김경우, 김상진,  
김호평, 문영민, 이동현,  
이세열, 이현찬, 이호대,  
임종국, 채유미, 한기영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방법을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함께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, 시정에 대한 관심유발 및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(안 제3조제1항).

나.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첨부).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.”를 “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”를 “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공개방법)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<u>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<u>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공개방법)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<u>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<u>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